

輸入食品의 申告 및 檢査 절차

林 琪 燮 / 보건복지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청

- 식품 등의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수입식품에 관한 관리 및 통상관련업무를 전담할 조직(식품유통과, 현재 식품진흥과)이 보건복지부에 설치되고, 각 검역소에서 수입검사 업무가 본격화된 것이 7년여에 이른다. 얼마되지 않는 기간이지만 그동안 국제적으로는 무역에 관한 환경의 변화, 국내적으로는 수입검사제도의 변화 등 이 분야에 많은 변화가 거듭되어 왔다.

WTO체제의 출범이후 세계의 시장은 하나가 되어가고 이에 따라 각종 관련제도도 점차 조화를 이루어 가고 있으며, 지금도 각 나라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서로의 입장차를 좁혀 나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각 나라는 보다 안전한 식품을 자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작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본부(KFDA)와 6개의 지방청이 발족되면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전담하여 왔으며, 앞으로 독립외청으로 개편될 전망에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수입식품관리업무가 완전한 전산화체제로 가동될 전망에 있어, 수입식품이 더욱더 효율적이고도 완벽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수입식품 등을 관리하는 업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사무중의 하나가 되었고,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수입자가 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신고하기에서부터 검사기관에서는 이를 검사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기 까지의 제반의 절차가 사실 식품위생법, 고시, 훈령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 필요할 때마다 따로 따로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해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 온것이 사실이며, 오늘도 많은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방문 및 문의전화에 시달려야 한다. 사실 처음 수입을 해본 사람이면 알 수 있을터이지만 알아야 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관련기관이나 업체에서 식품수입업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집필하였다.

저자 주 □

I. 輸 入 申 告

이 장에서는 수입신고시 갖추어야 할 서류와 기재요령, 서류검사시 확인할 사항, 검사절차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특히 수입신고서의 기재요령을 잘 몰라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이 검토하는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가능한 한 실무적인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1. 申告를 要하지 아니하는 食品 등

- 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식품 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식품 등
- 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 등
- 다.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식품 등
- 라.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당해 국 선박과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국내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 마.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 바. 식품첨가물중 화학적합성품을 제조하는 원료. 다만, 혼합제제의 성분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 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식품 등
- 아.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으로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사용하는 식품 등
-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

2. 申告 書 類

가. 수입신고서

- ☞ 수입신고서는 수입하는 식품 등의 종류별로 나누어 각각 양식을 달리

하고 있는데, 앞으로수입식품관리업무의 전산화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양식이 하나로 통일될 전망이다.

- 농·임산물을 수확 또는 채취한 그대로의 것이나 식품첨가물 또는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씻거나, 고르거나, 다듬거나,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숙성하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단순가열한 것의 경우에는 농·임산물 수입신고서<별지제4호서식(1)>
- 농·임산물을 제외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식품첨가물 수입신고서<별지제4호서식(2)>
-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기구, 용기·포장 수입신고서<별지제4호서식(3)>

나. 수입승인서(I/L) 사본

- ☞ 수출용 원자재인 경우와 외화획득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게 되며, 이는 외화획득용 원자재인지의 여부와 수출용 원자재인지의 여부를 I/L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다.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 사본

- ☞ 이는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천연첨가물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게 되며, 이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기준 및 규격검토서를 말한다.

라.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영업허가 (신고)증 사본

☞ 자사의 제품을 제조하기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와 유통전문판매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다른 영업자에게 자사명의의 품목제조·가공을 의뢰하고자 그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에 제출하게 되며, 허가관청에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상의 원료성분과 수입하는 원료가 같은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수입하는 용도외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마.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 정밀검사 대상식품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공인검사기관)에서 당해제품에 대하여 수입하기전에 미리 정밀검사를 받고 그 기관에서 발급하는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검사의 내용에 따라 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밀검사에 갈음하게 된다. 공인검사기관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관과 국외의 검사기관중에서도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하며, 그 기관에서 발급하는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도 인정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효율성을 기하고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마련한 제도이다. 국외의 검사기관은 현재는 미국 오레곤주 수출서 어비스센타 (곳이 지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점차 지정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바.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 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 또는 한글표시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말하며, 현장에서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서류검토시 한글표시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것이며, 미비한 경우 보완지시를 하게 되며, 수입식품 등에는 스티커로

된 한글표시를 인정하되 원래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제품에 스티커만으로 부착된 것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OEM(주문자상표표시방식)방식에 의한 것도 원칙적으로 스티커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 기 타

☞ 이밖에도 동일사동일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에는 과거에 받은 수입신고필증 사본과 제품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요구한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輸入申告書 作成要領

가. 일반사항

1. 식품 등의 수입신고시 신고인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첨부서류를 대폭 감축하는 한편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하였다, 이는 단순히 행정기관의 편의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수입식품 등의 검사에 따른 업무처리과정을 표준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수입신고서는 모두 전산으로 처리될 것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첨부서류감축에 따라 해당 서류의 번호만을 기재하는 선적관련서류(B/L), 최근 정밀검사신고수리일자·번호, 신고인번호 등이 잘못 기재될 경우 관련사항의 확인에 따른 업무처리 지연은 물론 수입신고인 자신에게 불이익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3. 동일사동일제품으로서 정밀검사를 생략하는 경우 최근 정밀검사 결과 적합으로 신고수리된 번호만으로도 전국 어느 지방식품의약품청 또는 검역소에서 즉시 조회가 가능하게 되므로 수입신고인이 동일사동일제품 해당여부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나 이를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사실확인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검사기간이 부득이하게 지연 처리될 수도 있다.

4. “동일사동일제품” 규정에 의한 여러 품목을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1매에 일괄신고(목록은 별도 첨부)토록 할 수 있으나, 이후 동일사동일식품 등의 인정범위에 해당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각각 별지에 따로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5. 수송편명, 수입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일사동일식품 등에 해당하는 품목이라도 수입신고서는 각각 별지에 작성하도록 한다.
6. 기재상의 주의사항
 - 가. 수입신고서는 복사물, 전산기기에 의한 인쇄물, 자체 인쇄물, 검사기관에서 배부하는 양식 등 어느 것이나 가능하나 서식내용과 크기(210mm×297mm A4)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기재내용도 전산기기에 의한 인쇄, 타자, 손으로 직접쓰는 방법 등이 모두 가능하나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 다. 부호(코드)화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부호와 부호명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라. 모든 기재항목은 정해진 기재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마. 수입신고서제출시 법정구비서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해당번호만을 기재하는 I/L, B/L 등은 그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므로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7. 기재상의 의문사항이나 고쳐야 할 점이 있을 때에는 각 지방식품의약품청

또는 검역소의 관계직원이나 보건복지부 식품진흥과(02-504-6206)에 알려주면 참고가 된다.(신고 및 검사기관 참조)

나. 수입신고자의 기재사항

- 도착전신고(예정 보관창고, 입고일자) 착전 5일내에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재토록하며, 도착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치 아니한다.

(1) 신고인

신고인이란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서(I/L)의 “②위탁자”를 말한다.

I/L상의 “①수입자”는 무역업허가를 받아 단순히 수입절차만을 대행할 뿐이므로 실수요자인 “위탁자”를 기재토록 하는 것이다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한다.

○ 상호

— 식품제조업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 신고, 등록, 면허 등을 받은 업종은 그 상호를, 관허업이 아닌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를 빠짐없이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 상호는 모두 한글로 붙여 쓰고 “주식회사”는 “(주)”로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는 “(합)”으로 “유한회사”는 “(유)”로 기재한다.

<기재의 예>

⑥용도란에 판매용인 경우는 수입식품판매업 신고필증에 기재된 업소명, 기타 자가소비용 또는 수출용 원자재 등인 경우에는 제조·가공업허가(신고)증에 기재된 업소명을 그대로 기재한다.

○ 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

- 대표자의 성명은 한글로 쓰며,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경우 마침표, 따옴표, 쉼표나 이음표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쓰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쓰되, 이음표나 빈칸이 포함되지 않게 앞란에서부터 모두 붙여 기재한다.

○ 전화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지역번호(DDD)를 포함하여 기재하고, 두 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업체는 연속된 번호인 경우 이음표를 하고 마지막 번호를 기재하고(연번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번호 하나만을 기재함), FAX로도 공문이 시행되므로 FAX 번호를 정확히 기재한다.

○ 소재지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 신고, 등록을 받아 수입신고하는 경우 허가(신고)증상에 기재된 영업장소재지(공장소재지,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하고 관련허가(신고)번호를 함께 기재한다.

○ 우편번호

이음표를 생략하고 6자리 숫자를 모두 붙여서 기재한다.

(2) 신고품명

○ 품명이 종전과 다르게 기재될 경우 동일사동일식품 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

일사동일식품 등은 품명기재에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 한글로 기재하는 경우는 20자, 영문인 경우는 40자 이내로 기재하여야 한다.

○ 동일사동일식품 등으로서 단순히 포장단위, 중량, 용량 등이 다른 경우에는 대표적인 품명과 함께 “○○○ 등 ○종”으로 기재하고, 그 목록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서 앞면의 신고수량, 중량, 금액은 전체합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제조회사(자연산물은 수출회사)

○ 자연산물은 수출회사명을,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은 제조회사명을 기재하되 한글인 경우는 20자이내, 영문인 경우에는 40자이내로 기재한다.

(4) 포장회사, 포장장소

○ 자연산물의 경우에 해당물품의 포장장소를 기재하며, 포장회사는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5) H.S.K번호

○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H.S.K품목분류표에 의한 번호를 기재하되, 10단위까지 모두를 빈칸이 없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 H.S.K번호에 대한 명칭(일반적인 품명)을 기재토록 한다.

(6) 용도

○ 수입식품 등의 수입목적(용도)에 따라 다음중 해당번호와 그 용도를 기재한다.

※수입식품 등의 용도분류 [표 2]

용도 번호	판매용 1	자사제품제조용 2	수출용원자재 3	외화획득용 4	연구조사용 5	기타 9
----------	----------	--------------	-------------	------------	------------	---------

(7) 신고수량(단위 :)

- 단위란에는 다음의 단위명칭별 표시기호를 기재한다.

※단위명칭 및 표시기호 [표 3]

단위명칭	표시기호	단위명칭	표시기호
킬로그램	kg	박스	box
매트릭톤	M/T	드럼	D/M
파운드	lbs	타스(12개)	doz
온스	oz	조, 세트	set
리터	ℓ	병	bot
킬로리터	kℓ	개	ea
케이스	c/s	짝	pcs
카톤	c/t	통(CAN)	tin

- 신고수량은 실제수입하는 당해식품 등의 중량 또는 용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위표에 없는 단위는 위표중 하나의 단위로 환산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의 예>

- 한 c/t당 12병이 들어있는 술(용량 : 360ml) 300c/t을 신고하는 경우

⑦신고수량(단위 : C/T)

백만	천	3	0	0

(8) 신고중량

- 중량은 kg단위를, 용량은 ℓ 단위를 기재한다(1ℓ는 1kg과 같이 취급).
- kg 또는 ℓ 외의 경우에는 kg 또는 ℓ로 환산하여 기재하되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기재하며, 총량 1kg (또는 1ℓ)이하는 1로 기재한다.
- 분할 수입신고하는 때에는 실제 수입신고하는 량을 써야 한다.

- 자연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은 수송포장을 제외한 실내용물의 중량(Net)을 원칙으로 하며, 기구 및 용기·포장은 총중량을 산정하여 기재한다

(9) 신고금액(단위 :)

- 단위란에는 수입승인서(I/L)상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수출국의 화폐단위에 해당되는 표시기호를 기재한다(27개 국가중 어느 화폐단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국달러로 환산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국가별 화폐단위 및 표시기호 [표 4]

국가명	화폐단위	표시기호
미국	달러	US\$
일본	엔	YEN
영국	파운드	STG
독일	마르크	DM
캐나다	달러	CA\$
프랑스	프랑	FFR
이탈리아	리라	LIT
스위스	프랑	SFR
홍콩	달러	HK\$
스웨덴	크로네	SKR
호주	달러	A\$
덴마크	크로네	DKR
벨기에	프랑	BFR
오스트리아	실링	SCH
노르웨이	크로네	NKR
네덜란드	길더	GL
사우디	리알	SR
쿠웨이트	달러	KDR
바레인	달러	BDR
U.A.E	디히시	DH
싱가포르	달러	S\$
말레이시아	링기트	M\$
뉴질랜드	달러	NZ\$
스페인	페세타	PTA
핀란드	마르카	FMK
대만	달러	NT\$
태국	바트	BAT

※ 통계처리시 환율의 적용기준시점은 수입신고서 접수일자, 환율은 전신환 매도율 기준임.

○ 달러(\$)의 명칭을 쓰는 국가가 여러 나라이므로 미국달러는 "US\$"로 분명히 표시하고, 기타 다른 나라의 달러도 확실히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환산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게 되도록 주의를 요한다.

<기재의 예>

수입승인서(I/L)에 금액이 ¥300,000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일본)

⑨ 금 액(단위: YEN)

			백만			천				
			3	0	0	3	0	0		

LIT 1,000,000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탈리아)

⑨ 금 액(단위: LIT)

			백만			천				
			1	0	0	0	0	0	0	

수입승인서(I/L)에 금액이 £300,000(영국)로 기재되어 있고, 분할 수입에 따라 그 중 100,000파운드만 수입신고하는 경우

⑨ 금 액(단위: STG)

			백만			천				
			1	0	0	0	0	0		

○ 분할 수입신고하는 때에는 실제 수입 신고하는 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쓴다.

(10) 수입년월일

○ 국내항구(공항)에 도착한 연월일을 연도 두자리, 월별 두자리, 일별 두자리로 기입하되 단수인 경우에는 앞의 여백에 0자를 기재한다.

<기재의 예>

92년 12월 3일 인천항에 도착, 92년12월5일 하역 및 보세창고에 입고후 92년 12월 20일 검역소에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수입년월일	9	2	1	2	0	3
-------	---	---	---	---	---	---

(11) 수입항

○ 식품 등이 국내에 하역된 공항(항구)의 부호와 명칭을 아래 표를 참조하여 기재한다.

☞ 부산항에 도착하여 인천으로 보세 운송한 경우의 수입항은 부산항으로 기재한다.

※ 수입항구 분류번호 [표 5]

수입항명칭 부호	김포	부산	인천	수원	군산	목포	여수	마산	김해	충무	삼천포	장승포	울산	포항	동해	제주		완도
																공항	항구	
부호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2) 수송편종류 및 명칭

- 수입식품 등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까지의 운송수단을 말하며 다음중 해당하는 번호와 그 명칭(선명, 항공편명 등)을 기재한다.
- 트럭에 수입할 식품 등을 싣고 케페리로 입항한 경우에는 선박으로 분류하고, 운반트럭의 번호를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운송수단의 분류 [표 6]

운송수단 번호	선박	항공기	기차	자동차
	1	2	3	4

(13) 원산지(분류번호집을 참고하여 기재)

- 원산지(자연산물은 원산국, 제조품은 제조국)의 부호와 한글명을 기재한다.

(14) 수출국(분류번호집을 참고하여 기재)

- 수출국의 부호와 한글명을 기재하되, 수출국은 원산지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I/L에 원산 및 수출국이 표기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 ☞ 캐나다산 소맥을 미국에서 집하하여 보스톤항구에서 선적한 후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는 캐나다가 되고 수출국은 미국이 된다.

(15) 보관창고(분류번호집 참조)

- ☞ 보관창고, 입고일자, 장치위치 등은 현장검사 및 검체채취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기재하는 것이므로 정확하게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 등의 보관창고(보세장치장)의 해당부호와 명칭을 기재한다.
- 입고일자 : 보관창고(보세장치장)에 입고완료된 날을 기재하되 곡물의

경우 본선 대기상태일 때에는 입고 완료일을 기재한다.

- 장치위치 : 관능검사 및 검체수거시 해당물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관창고(보세창고)에 보관된 수입식품 등의 위치를 기재한다.

(16) B/L번호

- 선적서상의 B/L번호를 앞에서부터 기재하되 하우스번호가 있으면 뒤에 ()하고 그안에 기재하여야 한다.
- 동일사동일식품 등으로서 선적서(B/L)가 여러장인 경우에는 물량이 가장 많은 품목의 B/L번호와 함께 “○ ○ 등 ○건”으로 기재한다.(나머지 B/L목록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여 번호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17) I/L번호

- 거래은행에서 부여한 수입승인번호를 앞에서부터 모두 붙여서 쓴다.
- 동일사동일식품 등으로서 수입승인서가 여러장인 경우에는 가장 많은 물량의 I/L번호와 함께 “○○ 등 ○건”으로 기재한다(나머지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여 번호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18) 최근 정밀검사신고수리일자·번호

- 정밀검사를 받아 신고수리 되었던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서 동일사동일식품 등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장 최근에 정밀검사를 받아 신고수리된 품목의 신고수리일자와 수리번호(신고필증번호), 통관한 지방식품의약품청이나 검역소명을 반드시 기재한다.

<기재의 예>

금회 수입신고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서울검역소에서 '95. 10. 10일자 01-95-02335호로 정밀검사를 받아 신고수리된 경우의 기재

17. 최근 정밀검사 신고 수리	일자	9	5	1	0	1	0	서울	
	번호	0	1	9	5	0	2	3	3

(19) 녹색신고(농·임산물), 주요성분 (식품·식품첨가물) 또는 재질

- 신고양식에 따라 농·임산물은 녹색 신고사항을 기재하고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은 주요성분과 그 배합비율을 기재하며, 기구 및 용기·포장은 재질명을 기재하며, 단일성분인 경우에는 배합비율란에 100%로 기재한다.

① 농·임산물의 녹색 신고사항
녹색신고서의 사용농약 명칭을 기재한다.

② 식품

- 성분명칭과 배합비율(%)은 정밀검사를 받아 신고수리된 품목을 재수입하는 경우 동일사동일식품 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필수검토사항이니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함으로써 추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성분명칭은 30가지 이내에서 기재토록 하되, 성분명칭 기재의 우선순위는 ① 주원료, ② 첨가물(색소, 보존료, 산화방지제 등), ③ 부원료 등의 순으로 기재토록 하고, 30가지를 초과하는 부원료 등 성분명칭은 함께 기재하고 배합비율은 합한 비율을 기재한다.

<예 : 소맥분, 과즙, 포도당 - 5% >

③ 식품첨가물

- 식품첨가물은 공전에 수재된 한글명을 기재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명 다음에 ()를 하고 영어명을

기재할 수 있다.

- 혼합제재인 첨가물에 있어서는 각 성분명칭과 그 배합비율(%)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동일사동일식품 등을 다시 수입할 때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기구 및 용기·포장

- 기구 및 용기·포장은 분류표를 참조하여 재질의 명칭을 기재하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직접 접촉되는 부분의 재질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기재의 예 >

우유팩의 재질은 외포장은 종이 또는 가공지제이나 우유와 접촉하는 내면이 에틸렌수지일 경우에는 종이 또는 가공지제가 아닌 “에틸렌수지제”로 기재한다.

- 유리제 등의 경우 도안·도색 및 테두리에 장식 등의 유무표시를 함께 기재토록 한다.

(20) 참고사항

- 수입식품 등을 운송하는 중에 사고가 있었을 경우 그 내용에 간략히 기재하여야 한다.

<예 : 운송중 ○○사고 발생>

- 방사선조사처리한 식품인 경우 “방사선조사 식품”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1) 수입대행업소명 및 연락처

- 본란은 수입신고처리시 검사업무의 수행시 필요한 경우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기입하는 것이므로 ①신고인 란에 기재된 사항으로 충분한 경우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 수입대행업소명 : 대행사가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대행사의 업소명과 전화번호 및 FAX번호를 기재한다.

- 연락처 : 신고인란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실제 연락처와 다른 경우 연락할 주소와 전화번호 및 FAX번호를 기재한다.

(22) 보세운송사항

- 수입신고하는 물품이 보세운송된 경우에는 필히 기재하여야 하며, 최초 도착지와 최종도착지를 함께 기재하고 뒤에 ()안에 승인번호를 기재한다.

<예 : 부산 → 서울(승인235호)>

4. 축산물 등의 수입신고

축산물 등을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수입신고서와 제2항의 수입신고필증을 가축전염병예방방법에 의한 축산물검역신청서와 축산물검역증명서로 갈음한다.(시행규칙 제11조제6항) 또한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압류·몰수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1조제7항).

5. 녹색신고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그 식품의 재배·보관·운송 등의 과정에서 사용한 농약 등의 종류와 그 사용시기를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신고를 성실히 한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사하는 등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1조의 3).

☞ 녹색신고는 농·임산물 수입신고서 뒷쪽에 재배중, 수확후, 보관·운송중으로 나누어 기재한다.

6. 수입신고 수수료

가. 수입물품별 수수료

수입신고물품	수 수 료
식 품	2만원
식 품 첨 가 물	2만원
기구·용기·포장	2만원

☞ 여기에서 수수료는 수입신고필증발급에 따른 증지대로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며, 수입신고 매 건당 2만원상당의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를 첨부한다.

나. 수수료의 면제

다음에 해당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① 외화획득용(수출용원자재를 포함)으로 수입승인된 식품 등
- ②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식품 등
- ③ 세관장이 공매절차 진행과정중 검사 의뢰하는 수입식품 등

7. 한글 표시

가. 목 적

한글표시사항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한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자신의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함은 물론 제품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검사기관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검사의 정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나. 표시대상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 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제조·가공하는 식품. 다만 식용얼음의 경우에는 5킬로그램이하의 포장 제품에 한한다.
- ② 식품첨가물의 제조허가를 받아 제조·가공하는 식품첨가물
- ③ 식품소분업의 신고를 하여 소분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 ④ 방사선으로 조사처리한 식품
- ⑤ 수입식품 또는 수입식품첨가물
- ⑥ 기타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수입하는 제품을 포함한다)

- ①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또는 용기·포장
- ② 용기류

다. 표시사항

식품 등에 표시할 한글표시는 개별제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인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 ② 식품의 유형(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 ③ 영업허가(신고)기관명 및 영업허가(신고)번호
- ④ 업소명 및 소재지
- ⑤ 제조년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 ⑥ 유통기한(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 ⑦ 내용량(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 ⑧ 성분 또는 원재료(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재질로 표시한다) 및 함량(특정성분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⑨ 영양성분(따로 정하는 제품이거나 영양성분을 표시하고자 하는 식품 등에 한한다)
- ⑩ 기타 식품 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라. 표시방법

- ①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일정장소에 일괄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표시할 사항에 따라서 제품명, 업소명 및 소재지, 영양성분, 기타 제품에 따라서 기준이 다른 세부사항은 제품의 특

성을 고려하여 영업자가 편리한 곳에 표시할 수 있다.

- ② 표시사항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적은 내포장된 건과류 및 캔디류는 판매업소에서 공급하는 제품의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 ③ 일정장소에 일괄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의 활자의 크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는 경우로서 표시면적이 인쇄가용면적의 6퍼센트 이상인 제품과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납세병마개제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인쇄가용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이하의 경우 : 5.0포인트이상
 - ㉡ 인쇄가용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초과 500제곱센티미터이하의 경우 : 7.5포인트이상
 - ㉢ 인쇄가용면적이 500제곱센티미터 초과인 경우 : 12포인트이상
- ④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한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와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어 상표는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
- ⑤ 용기나 포장은 다른 제조업소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식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용기로서 일반시중에 유통판매할 목적이 아닌 다른 회사의 제품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한글표시 생략범위

수입식품 또는 수입첨가물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① 자연상태의 농·축·수산물 또는 과일류(용기에 넣어진 것이나 포장된 것은 제외)
- ② 소분판매를 위한 대포장(벌크상태)의 것
- ③ 자사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리에 사용하기 위한 원료
- ④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수출용원자재포함)으로 수입승인을 받은 것

바. 표시사항의 적용 특례

식품 등의 표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96-51호)에서 정한 바대로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사항이나 표시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진열 판매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와 수입식품 등의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며 떨어지지 않게 부착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식품 등에 있어서는 원래의 포장지에 표시된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입식품 등의 포장지가 외국어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해서는 아니되며, 용기류에 있어서는 재질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 수입식품 등에 제조자의 원래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한글로된 스티커만 부착해서는 아니되며, OEM의 방식의 표시에 있어서도 스티커만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글로된 일부분을 지우거나 덮어써서도 안된다.
- ③ 표시대상식품 등 중 식품, 식품첨가

물, 식품소분업으로 신고하여 소분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방사선으로 조사처리한 식품, 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외한 단순히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은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업소명, 제조년월일(포장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만을 표시할 수 있다.

- ☞ 농·임산물 등을 랩등으로 싸거나 육안으로 내용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의 것을 말한다.
- ④ 절임식품(단무지에 한한다) 또는 두부류를 운반용 위생상자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운반용 위생상자에 업소명 및 소재지, 영업허가(신고)기관명 및 영업허가(신고)번호만을 표시할 수 있다.
 - ☞ 운반용상자를 다른 업소의 것을 사용하거나 실제 내용물과는 관계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수출식품에 대하여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대로 표시할 수 있다.

사. 식품 등의 세부표시기준

☞ 부록 : 식품 등의 표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96-5(호) 「별지 1」을 참조한다(부록편에 수록).

아. 중량 등의 허용오차

☞ 부록 : 식품 등의 표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96-5(호) 「별지 2」를 참조한다(부록편에 수록).

자. 표시사항의 확인

수입하는 식품 등의 표시사항은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스티커 및 포장지 등 한글 표시의 견본에 의하여 서류검사시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관능검사나 현장검사시 부착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유통과정중에서도 식품위생감시원들의 감시활동에 의하여 감시를 받게 된다. 표시한 사항

도착전 미리 경우에	5일내에 신고하는 기재함	보관창고 입고일자	농·임산물 수입신고서				처리 기한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3일 5일 18일
① 신고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 호	소재지	우편번호							
전 화	(Fax:)	영업허가 및 판매업신고번호	(시·군·구)계 호						
② 신고품명			HSK 번호						
③ 수출업자			HSK 품명						
④ 포장장소			생 산 국						
⑥ 용도	⑦ 신고수량(단위:)	⑧ 신고중량(단위:Kg)	⑨ 신고금액(단위:)						
⑩ 수입연월일	⑪ 수입항	⑫ 수송편종류 및 선명	⑬ 원산지	⑭ 수출국					
⑮ 보관창고	입고일자	장치 위치							
⑯ B/L번호	⑰ 최 근 일자		정밀검사 신고수리 번호						
⑱ I/L번호	⑲ 녹색신고		뒷면에 기재	수입대행업소	연락처:	보세운송기재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청장, 국립 검역소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수입승인서 사본(자사제품 제조원료와 수출용원자재에 한함) 2. 품목제조보고서사본 및 영업허가(신고)증 사본(자사제품 제조원료에 한함) 3.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국내의 검사기관의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수수료 2만원	면 제	<input type="checkbox"/> 외화력득(수출용원자재 포함) <input type="checkbox"/> 연구조사용 <input type="checkbox"/> 세관장이 의뢰하는 식품등
수입신고처리상황									
① 접수번호	(지방식품의약품청, 국립검역소 기재용)						② 접수년월일		
③ 현장 조사 일자	④ 보완 요구 일자	사유	사유	⑤ 검사종류					
⑥ 품목코드	⑦ 통관방법		1. 결과 확인전	2. 결과 확인후					
⑧ 정밀 검사 실시	1	검사기관	의뢰내용	성적일자	적 합				
		의뢰일자		성적번호	부적합				
	2	검사기관	의뢰내용	성적일자	적 합				
		의뢰일자		성적번호	부적합				
⑨ 검사결과조치구분	⑩ 행정 조치 내용	사유	사유	통보인	문서번호				
				내 용					
⑪ 신고수리일자 번호	수량(단위:)		중량(단위 Kg)		금액(단위:)				
⑫ 폐기·반송등 완결 일자	내용		근 거						

(뒷 쪽)

※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에 사용된 농약의 녹색신고시 기재하는 란이며 농약명은 화학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No	사 용 농 약 명		
	제 배 중	수 확 후	보 관 · 운 송 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지 제4호서식(2)]

(알 쪽)

도착전 미리 경우에	5일내에 신고하는 기재함	보관창고 입고일자	<input type="checkbox"/> 식 품 수입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식품첨가물	처리 기한	서류검사 3일 관능검사 5일 정밀검사 18일
① 신 고 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상 호	소재지	우편번호			
전 화	(Fax:)	영업허가 및 판매업신고번호	(시·군·구)재 호		
② 신 고 품 명			④ H S K 번호		
③ 제 조 회 사			품명		
⑤ 용 도	⑥신고수량(단위:)	⑦신고중량(단위:Kg)	⑧신고금액(단위:)		
⑨수입연월일	⑩수입함	⑪수송편종류 및 선명	⑫원산지	⑬수출국	
⑭보관창고	입고일자		장치 위치		
⑮B/L번호			⑯최 근 정밀검사 신고수리 번호		
⑮I/L번호					
⑰성 분	뒷면에 기재	참고사항	보세운송기재		
※ 수입대행 업소명 :			연락처 :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성장, 국립 검역소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수입승인서 사본(자사제품 제조원료와 수출용원자재에 한함) 2.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 사본(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제조하여야 하는 천연첨가물에 한함) 3. 품목제조보고서사본 및 영업허가(신고)증 사본(자사제품 제조원료에 한함) 4.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국내의 검사기관의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5.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스티커 처리된 포장지 포함) 또는 그 내용			수수료 2만원	면 제 ○ 외곽특등(수출용원자재 포함) ○ 연구조사용 ○ 세관장이 의뢰하는 식품등
수입신고처리상황 (지방식품의약품성장, 국립검역소 기재용)					
①접수번호			②접수년월일		
③현장 조사 일자	④보완 요구 일자	사유	사유	⑤검사종류	
⑥품목코드			⑦통관방법	1. 결과 확인전 2. 결과 확인후	
⑧정밀 검사 실시	1	검사기관	의뢰내용	성적일자	적 합
		의뢰일자		성적번호	부적합
	2	검사기관	의뢰내용	성적일자	적 합
		의뢰일자		성적번호	부적합
⑨검사결과조치구분	⑩행정 조치 내용	사유	통보일	문서번호	
		사유	내 용		
⑪신고수리일자 번호	수량(단위:)		중량(단위 Kg)	금액(단위:)	
⑫폐기·반송등 완결 일 자	내용		근 거		

31311-20711민
'95. 7. 26 승인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

(뒷 쪽)

※ 성분명칭은 제품에 함유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며, 모든 원료명을 기재하되, 동일사 동일식품등 및 제품유형의 분류를 위하여 가장 많이 함유된 원료의 배합비율만을 기재

No	성분명칭	성분배합비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도착전 5일내에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 기재함	보관창고 입고일자	<input type="checkbox"/> 기 구 수입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용기·포장 수입신고서		처리 기한	서류검사 3일 관능검사 5일 정밀검사 18일
① 신고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상 호	소재지	우편번호		
	전 화	(Fax:)	영업허가 및 판매업신고번호	(시·군·구)제 호	
② 신고품명			④ H S K 번호		
③ 제조회사			품명		
⑤ 용도	⑥ 신고수량(단위:)	⑦ 신고중량(단위: Kg)	⑧ 신고금액(단위:)		
⑨ 수입연월일	⑩ 수입항	⑪ 수송편종류 및 선명	⑫ 원산지	⑬ 수출국	
⑭ 보관창고	입고일자		창치 위치		
⑮ B/L번호			⑯ 최 근 정밀검사 신고수리 번호		
⑯ I/L번호					
⑰ 재 질	뒷면에 기재	⑱ 참고사항	보세운송기재		
* 수입대행 업소명 : 연락처 :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청장, 국립 검역소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수입승인서 사본(자사제품 제조원료와 수출용원자재에 한함)			수수료	면 0 외화적등(수출용 원자재 포함) 0 연구조사용 0 세관장이 의뢰하는 상품
	2. 품목제조보고서사본 및 영업허가(신고)증 사본(자사제품 제조원료에 한함)			2만원	
3.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국내의 검사기관의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수입신고처리상황					
① 접수번호			(지방식품의약품청, 국립검역소 기재용)		② 접수연월일
③ 현장 조사 일자	④ 보완 요구 일자		사유	⑤ 검사종류	
			사유		
⑥ 품목코드			⑦ 통관방법 1. 결과 확인전 2. 결과 확인후		
⑧ 정밀 검사 실시	1	검사기관	의뢰내용	성적일자	적 합
		의뢰일자		성적번호	부적합
	2	검사기관	의뢰내용	성적일자	적 합
		의뢰일자		성적번호	부적합
⑨ 검사결과조치구분		⑩ 행정 조치 내용	사유	통보일	문서번호
		사유	내용		
⑪ 신고수리일자		수량(단위:)	중량(단위 Kg)	금액(단위:)	
번호					
⑫ 폐기·반송등 완결 일자		내용	근 거		

(뒷 쪽)

No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명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중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통관한 후 시중에 유통하기전까지 이를 보완한 후에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관련 행정처분기준(개별기준)중 8.법 제10조(표시기준) 및 법 제11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사항으로서 가목내지 타목을 제외한 표시기준 및 허위 표시사항이 3개사항 미만인 때를 말한다.

(1) 수입식품 등의 표시사항 검사시 확인 및 주의할 사항

- ① 농·임산물이 용기 또는 포장에 넣어진 경우에는 표시기준에 맞는 적절한 표시를 했는지 여부
- ② 여러종류의 식품이 같은 용기 또는 포장내에 함께 넣어진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가장 짧은 식품의 유통기한을 전체식품의 유통기한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

- ③ 표시의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유통판매하기 전에 동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
- ④ 규정된 표시사항이 당해 식품 등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식품 등의 신고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 ⑤ 수입후 국내에서 소분후 재포장하여 판매되는 제품으로서 한글표시가 생략되는 경우 등 제품의 수입업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유통전에 시·군·구의 위생감시원에 의한 확인으로 한글표시사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⑥ 제조자가 표시한 원표시의 내용과 다르게 수입자가 임의로 정정하여 표시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II. 檢 査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업무절차는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서 세부적인 절차와 보건복지부훈령 제29호(1996. 12. 20)에서 세부적인 처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및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자로부터 수입신고를 받으면 식품 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당해 식품 등에 대한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검사의 종류, 절차, 불합격시 처리방법 등 검사에 관한 일련의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檢査의 種類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는 서류검사(표시사항검사포함), 관능검사, 정밀검사로 나눌 수 있으며, 수입하는 제품의 종류나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받게 된다.

가. 서류검사

서류검사라 함은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이 검사에서는 제품의 명칭, 성분배합비율, 허용외 첨가물 사용, 표시기준 등의 적정여부와 동일사동일식품 해당여부, 용도 등을 검사하게 되며, 검사기간은 통상 3일이다.

(1) 서류검사의 대상(식품위생법시행
규칙제11조 별표6)

- ①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외화 획득용(수출용 원자재 포함)으로 수입승인을 받은 식품 등
- ②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 또는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식품 등 또는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자사제품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등
- ③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대상인 식품 등
 - ☞ 식품첨가물중 타르색소, 타르색소제제, 보존료, 보존료제제가 해당되며, 이 경우에 제품검사성적서는 수입통관후에 제출할 수 있다
- ④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식품 등
- ⑤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 등
 - ☞ 이 경우에는 국내의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및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에 한한다
- ⑥ 식용향료(조합향료 및 단일성분의 착향료를 포함한다)
- ⑦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접촉되는 재질이 스테인레스·나무·돌 또는 착색되지 아니한 유리체로 된 기구 및 용기
- ⑧ 정밀검사를 받았던 것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재수입하는 식품 등(동일사동일식품)
- ⑦ 식품·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제조국·제조업소·제품명 및 제조

방법이 같은 것

- ㉠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제조국·제조업소 및 재질이 같은 것
- ㉡ 농·임·수산물의 경우에는 생산국·품명·수출업자 및 포장장소가 같은 것으로서 3월이내에 재수입하는 것

나. 관능검사

관능검사라 함은 제품의 성상·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보관상태·정밀검사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주로 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검사에는 타검봉, 저울, 당도계 등 간단한 시험장비가 필요할 경우가 있다. 정밀검사대상인 경우에는 검체를 채취하게 되며, 검사기간은 서류검사를 포함하여 통상 5일이다.

(1) 관능검사의 대상(식품위생법시행
규칙 제11조 별표6)

- ①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원료성의 농·임·수산물로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
 - ☞ 원료성의 농·임·수산물이란 자연상태 그대로의 것이거나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거나 냉동하는 등 가공과정을 거쳐도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한 상태의 것을 말한다.
- ② 서류검사대상중 지방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
- ③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세구역내에서 압류·몰수하여 세관장이 검사를 요구한 것으로서 그

물량이 일반적인 검체수거량의 5 배이하인 식품 등

다. 정밀검사

정밀검사라 함은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시험분석실에서 시험장비 또는 시험기기에 의하여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하며, 검사기간은 통상 18일이다.

(1) 정밀검사의 대상(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 별표6)

- ①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등
 - ☞ 동일사동일제품중 정밀검사를 받았던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농·임·수산물도 포함된다
- ② 국내외에서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식품 등
 - ☞ 국내·외 언론에 보도 되었거나 국회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식품 등
- ③ 수입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은 식품 등의 경우로서 재수입하는 동일사동일식품 등
- ④ 식품위생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대상인 식품 등(식품첨가물은 제외한다)
- ⑤ 수거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식품 등
- ⑥ 관능검사결과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 등

라. 무작위표본검사

무작위표본검사라 함은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식품 등에 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의 표본추출검사계획에 의하여 정밀검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수입신고필증은 검사결과 확인전에 교부하고 검사기간은 신선식품류에 대하여는 5일이내에 마치게

되며, 그 외의 것은 일반적인 정밀검사와 같이 한다.

(1)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 별표6)

- ① 정밀검사를 받았던 동일사동일식품 등
- ② 자사제품제조용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등

2. 檢査의 方法 등

가. 검사기관 및 검사기관의 유의사항

- ① 수입식품 등의 검사는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행한다. 다만, 제품검사대상식품 등의 정밀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식품위생기관에서 행하고, 수입신고인의 검사요청을 받았거나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의 검사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직접 검체를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
- ② 수입신고인이 지방식품의약품청 또는 국립검역소가 아닌 타기관에 검사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정한 검사수수료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를 검사를 행한 검사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보세구역 등에서 수입식품 등의 검사를 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그 검사결과 확인전에 동 식품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등

- ① 검체의 채취 및 취급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중 검체의 채취 및 취

급방법에 의한다.

- ② 검체의 채취 및 취급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수입신고인 또는 수입물품을 관리하는 자의 참여하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검체를 채취하는 때에는 소정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검체의 채취량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7]의 수거량에 의하되, 최소포장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검체의 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소의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 ④ 벌크상태의 곡류
 - ㉠ 검체의 채취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상에서 하거나 사이로에 투입하기전에 하여야 한다.
 - ㉡ 동일모선에 선적된 동일품명의 농·임·수산물로서 품명이 같은 것이 여러구역에 분산되어 선적된 경우에는 각각의 중량비율에 따라 채취하여 혼합한 것을 검체로 할 수 있다.
 - ㉢ 기구 또는 용기·포장기구 또는 용기·포장으로서 재질은 같으나 단순히 용도·모양·크기·제품명 등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성이 있는 것을 검체로 할 수 있다.

다. 기준 및 규격의 적용원칙

기준 및 규격의 적용은 제품명, 성상, 원재료 및 성분배합비율, 제조방법 및 용도 등에 의하여 적합하게 표시된 식품유형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며, 식품공전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은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여진 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에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적용한다.

- ① 식품공전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 및 규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을 함께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식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필요성이 희박하거나 실효성이 적은 경우에는 그 중요도에 따라 선별 적용할 수 있다.
- ②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식품은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1) 식품일반의 규격 중 (5)식중독균, 2)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 4)식품중 방사능 잠정허용기준, 5)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6)식품중 아플라톡신 잠정허용기준 7)마비성패독 허용기준 8)식육의 농약잔류허용기준 9)인삼(건조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위 ①단서 규정과 같이 선별 적용할 수 있다.
- ③ ②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식품중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과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외의 일반가공식품은 각각의 10) 통·병조림식품의 성분규격, 11) 레토르트식품의 성분규격 12) 냉동식품의 성분규격 13)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외의 일반가공식품 규격중에서 선별 적용할 수 있다.
- ④ 식품공전의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그 기준·규격이 정하여진 식품과 그 외의 일반가공식품으로서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에 해당하는 제조·가공처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식품의 기준·규격과 함께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단, 식육가공품 또는 어육가공품중 비가열제품은 제외) 각각의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규격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규격 항목을 적용(단,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의 성분규격 중 미생물 항목은 각각의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의 성분규격에 의한다)하여야 한다.

라. 정밀검사방법 및 그 결과의 통보

- ①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수입식품 등의 검체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②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검사는 이전의 정밀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검출빈도가 높거나 인체의 위해도가 높은 잔류농약·중금속·병원미생물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 ③ 수입신고인의 검사요청을 받았거나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으로부터 검사의뢰를 받은 식품 위생검사기관은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수입신고인이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정밀검사결과에 확인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정밀검사결과를 수입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마.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 성적서인정 등

수입신고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품 등에 대한 정밀검사에 같음하거나 그 검사

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나 검사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표시기준·허위표시 등의 확인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식품등이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사. 식품 등 원료의 적정사용여부 확인

(1) 식품원료의 구비요건

- ① 다음의 동·식물은 식품제조·가공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거나, 부원료로서 최소량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 식품의 원료로서 사용할 수 없는 동·식물 등 고삼, 도인, 동충하초, 목향, 여정실, 유백피, 음약과, 차전자, 천마, 토롱용, 행인, 향부자, 홍화, 기타 약리작용과 효과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식물
 - ㉡ 부원료로서 최소량 만을 사용할 수 있는 동·식물 구관, 노루귀, 녹각, 녹용, 달개비, 백복령, 복분자, 사상자, 사인, 산사자, 삼백초(어성초), 삼부뿌리, 석창포, 숙지황, 원지, 천궁, 측백엽, 토사자, 하수오 등
 - ㉢ 알로에는 건강보조식품의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잎(추출물분말)은 건강보조식품의 부원료로서 1회 섭취량으로 7mg 미만을 사용할 수 있다.
 - ㉣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추출물은 특수영양식품의 식이섬유 가공식품 및 저열량식품의 부원료로서 최소량(5%이하를 사용하여야 하나 1일 섭취량으로 6g

을 초과할 수 없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다음에 해당되는 동·식물성 기타 원재료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일반인들의 전래적인 식생활이나 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 ㉡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아니하는 것
- ㉢ 식품원료로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
- ㉣ 신개발원료로서 안전성에 대한 입증이나 또는 확인이 되지 아니한 것
-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식용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2) 기구 및 용기·포장

- ① 식품의 용기·포장은 용기·포장류 제조업 신고를 필한 업소에서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다만, 그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기구 및 용기·포장류는 그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아. 검사항목의 적용

- ①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정밀검사 또는 본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식품에 대하여는 식품공전상 식품별 기준 및 규격외의 가공식품 규격을 우선 적용하고,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비소·중금속·식품첨가물·이물·항생물질·방사능·아플라톡신·마비성패독 등의 위해성분항목중에서 필요한 검사항목을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 ②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식품에 대하여 정밀검사 또는 본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검사항목을 중심으로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정밀검사 대상식품중 특수 영양식품 및 제품검사대상식품 등에 대하여는 당해 성분규격 관련항목 모두를 검사하여야 한다.
 - ㉠ 중금속의 함량(예 : 납, 카드뮴, 동, 주석 등)
 - ㉡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예 : 보존료, 타알색소, 인공감미료, 이산화유황 등)
 - ㉢ 미생물의 오염도(예 :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크로스트리디움 등)
 - ㉣ 불량지표항목(예 : 산가, 과산화물가, 메탄올, 포스파타제, 총페오르바이드, 시안화합물, 휘발성염기질소 등)
 - ㉤ 당해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중요성분으로서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선정하는 항목(예 : 아이스크림의 유지방분, 주류의 알콜함량 등)
- ③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의 항목은 검사이력, 독성, 검출빈도 및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자. 국내외 공인검사기관

(1) 국내공인검사기관

- 1. 식품의약품안전본부
- 2. 지방식품의약품청
- 3. 국립검역소
- 4.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5. 국립수산물검사소(수산물검사에 한한다)
- 6. 한국식품위생연구원
- 7. 한국식품연구소

(2) 국외공인검사기관

국외검사기관으로는 아래검사기관이 최

초로 지정되어 있고, 앞으로 요건에 맞을 경우 점차 확대하여 지정해 나갈 전망이다.

검사기관명 : Oregon Department of Agriculture Export Service Center

주소 : Albers mill Building Suite 320
1200 NW Naito Parkway Portland, OR 97209-2898 USA

전화번호 : Laboratory Service Division
(503)229-6557

Fax (503)229-5933

차.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의 활용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자가 국내의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검사내용의 인정

- ① 수입자가 제출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검사방법에 적합한 경우에 정밀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 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일부항목만을 인정하거나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 ㉠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내용의 일부만이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검사방법에 적합한 경우
 - ㉡ 시험방법이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검사방법과 서로 다른 경우

(2)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의 불인정

- ①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카. 신선식품류의 검사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신선식품류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① 신선식품류 등을 신속하게 검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수입신고필증을 우선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수입신고서 접수당일(늦어도 익일)에 서류 및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5일 이내에 정밀검사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본검사 대상식품 등중 신선식품도 해당된다.
- ④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는 [별표 1]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우선순위 등급중 1 및 2순위 이외의 농약이라 하더라도 동시 다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분석한다.
- ⑤ 정밀검사 또는 본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 수입자가 신속히 이를 회수하여 반송·폐기 또는 식용외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판매유통계획서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타. 검사결과확인전 신고필증교부

다음의 식품 등에 대하여는 검사결과 확인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이 제도는 신선식품의 신선도유지나 정부의 물가조절 또는 원료의 수급정책상 필요에 의한 것이며, 구체적인 대상식품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제1(조제2항 및 제3항))

- ① 신선한 식품류
 - ㉠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패류
 - ㉡ 신선하거나 냉장한 과일류 또는 채소류
- ☞ 썩었거나 상한 것이 조금 섞여 있어 선별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② 원료의 수급 또는 물가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식품 등
- ③ 표시기준에 경미한 위반사항으로서 통관후에 시중에 유통되기 전까지 동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식품 등
 - ☞ 표시보완작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표시보완경과의 확인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본검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식품 등

파. 수입식품 등의 목적외 용도사용 승인

(1) 목적외 용도사용 승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한 자가 영업장의 폐쇄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받거나 원료를 수입하여 제조·가공한 당해 품목의 제조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입목적외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2) 목적외 용도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자가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수수료만을 지급하고 자신이 수입한 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토록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외의 용도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목적외 용도사용승인에 따른 구비서류

- ①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발행한 수입신고필증 사본
- ② 다른 업소에 판매하고자 하는 물량 및 사유서
- ③ 당해 원료를 판매하는 자 및 당해 원료를 구입하는 자의 영업허가(신고)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 ④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이 경우 수입식품 등의 목적외 사용을 승인하는 기관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체를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⑤ 수입승인서 및 위탁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 다른 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의뢰

- ① 수입자는 지방식품의약품청 또는 국립검역소 이외의 다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의뢰신청서(별지서식)를 수입신고시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자로부터 다른 검사기관에 검사할 것을 의뢰 받은 때에는 식품의 유형 및 시험하여야 할 검사항목을 명시하여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③ 이 경우 수입자는 당해 검사기관에서 정한 검사수수료를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 ☞ 현재 지방식품의약품청 또는 국립검역소 이외에 다른 검사기관에서의 검사는 한국식품위생연구원[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 02)826-2100], 한국식품연구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 ☎ 02)585-5052] 등 2개 검사기관에서 하고 있다.

3. 검사결과 부적합한 식품 등의 처리

가. 처분기관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

- ①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식품 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한 식품 등에 대하여는 당해 수입자 또는 세관장에게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식품 등에 대한 검사기준과 검사결과를 함께 알려 주어야 한다.
- ②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부적합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지방식

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검사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수입식품 전산망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 ③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선식품류 이외의 농·임·수산물에 일부 부패되거나, 변질 또는 폐사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이를 선별토록하여 부패되거나 변질 또는 폐사된 물량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부적합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수입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수입자는 자신이 수입신고한 식품 등에 대하여 부적합처분을 받게 되면 이를 처리

할 계획을 세워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처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①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재수출)
- ②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 ③ 당해 식품 등에 대한 검사결과 기준 및 규격중 수분함량 등 경미한 성분 규격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해의 제거후 재수입신고
- ④ 위 사항중 해당이 안되는 경우에는 폐기조치를 하여야 한다.